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-33호

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라목·마목, 제86조제3항·제4항, 제87조 제2항·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,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-70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6년 8월 26일

우정사업본부장

##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, 감액요건,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

### I. 우편요금 감액대상

1.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: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.
2.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: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<sup>(\*)</sup>에서 1회 5,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

(\*)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선거구에서의 발송 시 복합선거구내 소재 4급 또는 5급우체국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접수우체국별로 각각 연간 3회 범위 내에서 감액을 적용함

## II. 우편요금 감액요건

### 1.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

가. 우편집중국

나.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

### 2. 우편물 제출요건

가. 우편번호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-63호(2014.12.1.,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))를 사용하여 앞3자리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

나.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음

다. 각 묶음에는 행선지의 우편번호와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함

라.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(이하 '접수신청서'라 함)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(이하 '접수목록표'라 함) 제출

1) 우편물의 종류, 구분정도, 묶음 및 용기 수,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[별표1]를 제출해야 함

2) 일련번호, 우편번호,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[별표2]를 제출해야 함

3)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

구 분	제출방법
접수신청서	서면
접수목록표	파일(엑셀)

마.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추가 준수 사항

- 1) 우편물 제출(최초) 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발급한 “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”을 제출해야 함
- 2)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.  
다만,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(지사, 지점 등)에서 발송 시에는 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’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

### Ⅲ. 우편요금 감액범위

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	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
25%	67%

## 부 칙

1.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##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

- 발 송 인 :
- 전화번호 :
- 우편물 목록

우편물종류	묶음 및 용기종류		우편번호 구분정도	통당중량 (g)	통당요금 (원)	통수합계 (통)
	종류	수량(개)				
합계						

위와 같이 우편요금을 감액받기 위한 우편물 접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○ ○ ○ ○우체국(우편집중국)장 귀하

